

※ 별첨 : 공개질의서(총 6매)

- 수 신 : 기획재정부 장관
- 참 조 : 기획재정부 차관보
- 제 목 : 공개 질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요청

○ 안녕하세요.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귀 부는 지난 '13년 12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14년 1월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조 및 제7조는 귀 부에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귀 부의 장관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법부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할당계획 수립에 있어서 귀 부에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귀 부에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를 보내니 빠른 시일 내에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배출권 할당위원회 회의 연기 사유 및 향후 개최 계획]

○ 배경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정부로 하여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차 계획기간이 '1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동법 부칙 제2조를 감안하면, 할당계획은 이미 지난 '14년 6월 30일까지 수립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14년 5월 27일 발표한 할당계획(안)은 귀 부의 장관이 위

원장인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못해 법률로 정한 수립 기한이 1개월 가깝게 지났음에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 부는 배출권 할당위원회 회의 개최를 3차례나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당계획의 수립 지연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큰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을 행정기관이 고의적으로 위반한 대표적인 ‘위법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계획기간의 기간 및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계획기간(이하 "1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두 번째 계획기간(이하 "2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②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 **질의 1-1** : 귀 부가 개최 예정이었던 배출권 할당위원회 회의의 일시와 연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1-2** : 배출권 할당위원회 회의를 언제 개최할 것인지 귀 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제도 취지를 살리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의 의미]

○ **배경** : 지난 7월 22일 귀 부의 장관인 최경환 부총리와 경제5단체장의 간담회 결과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경제계와 관련 부처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 제1항 제1호는 배출권 할당계획에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취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에 있음이 명백합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배출총량이 국가 배출량의 81.6%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곧 국가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감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배출권을 과다 할당하게 되면,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배출권을 판매해 초과이익을 얻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질의 2-1** : 귀 부가 검토·협의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감축률, 배출권 할당총량, 가격 상한선 설정에 관한 혼선]

- 배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가정, 수송 등 다양한 부문의 공평한 감축 분담과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감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귀부의 방침은,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가정 등의 감축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할당계획(안)에는 주로 대기업인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에 대한 특혜를 의미하는 '감축률 10% 완화'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출주력업종과 에너지집약업종에 대해 계획기간에 관계없이 배출권을 지속적으로 100% 무상 할당한다는 계획도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1차 계획기간('15~'17)에 기업들의 감축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감축률을 추가로 완화해 배출권 할당 총량을 늘리게 되면, 2차 계획기간('18~'20)에 해당 기업들이 저야할 감축부담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차기 정부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가격 상한선 설정은 시장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배출권 거래제의 취지에 어긋나며, 상한선이 낮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동기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 질의 3-1 : 귀부는 '감축률 10% 완화'라는 특혜에 더해 감축률을 추가 완화하는 등의 편법으로 배출권 할당총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3-2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격 상한선을 톤당 1만원으로 통제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배출전망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 **배경** : 지난 7월 15일 전경련 등 23개 경제단체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지난해 범부처 공동작업반을 운영하여 배출전망치를 재검증한 결과 ‘09년 배출전망치가 현실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14년 1월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전망치(BAU)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경제단체들의 주장은 불과 6개월 전에 이루어진 국무회의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정부의 ‘신뢰성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 **질의 4-1** : 정부가 오랜 시간 부처 협의를 통해 재확인했던 ‘09년 배출전망을 부정하고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인지 귀 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배출권거래제 비용과 편익에 관한 귀 부의 판단]

- **배경** : 전경련 등 23개 경제단체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15~’17년에 최대 27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 부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계의 주장은 거래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감축과 배출권 확보에 실패하여 과징금(톤당 10만원)을 납부한다는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이행비용은 감축활동에 따른 비용과 편익, 배출권 구입비용과 판매수익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질의 5-1** : ’15~’17년에 최대 27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경제단체들의 주장이 공상에 가까운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귀 부가 알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5-2** :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대상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과 편익에 대해 귀 부 자체적으로 산정한 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6 [국제사회의 신뢰 상실로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입장과 대책]

○ **배경** :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을 연기하거나 비상식적인 이유로 배출권을 과다 할당할 경우,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운영 기금 마련 등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9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12월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0)에서도 우리나라의 입지는 대폭 위축될 것입니다.

○ **질의 6-1** : 배출권 거래제가 후퇴할 경우 국제사회의 신뢰 상실 등으로 우리나라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한 귀 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의 공개질의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4년 7월 24일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시민발전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

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은선 연구원 070-7124-6062

110-070)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422호

Tel. 070)7124-6060~2 / Fax. 070)7124-6063